

# 서울 성서교회의 헌법

## 제 1 조 명칭

본교회의 이름은 서울성서교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서울성서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 영어권 지역을 위한 영적 사역자를 준비시키며, 또한 통역을 통하여 한국인들을 위한 영적 사역자를 준비시킨다.

제 2 항 : 길 잃은 영혼들에게 전도한다.

제 3 항 : 밥존스 신학교의 사역을 후원한다.

## 제 3 조 교인

제 1 항 자격 : 본교회의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앙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 (1)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교회운영위원회를 납득시켰으며,
- (2) 교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으며,
- (3) 교인으로서의 서약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 2 항 의무 :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며, 본교회의 예배에 항상 참석하며, 교회의 유지와 목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유기적인 사역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 3 항 권리 : 18 세 이상의 교인들은 교회의 어떠한 업무회의에서든지 투표권을 갖는다.

제 4 항 의결정족수 : 교회의 모든 업무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제적의 25%로 한다.

제 5 항 자격상실

- (1) 어느 교인이든지 선한 뜻에서 타 교회로 가고자 이적증명서와 추천서를 원할 때에는 교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협동목사 (들), 전도사 (들), 집사 (들)로 구성된다.
- (2) 9 개월 동안 교회에 계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운영위원회가 통고하여 회답을 받은 뒤에 그 사람의 교인됨을 취소할 수 있다.
- (3) 부도덕하거나 반기독교 적인 행의를 한 사람에 대해 교회운영위원회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서 그 사람을 제명할 수 있다.

## 제 4 조 - 교회의 직분들

### 제 1 항 목회자들

-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한국복음친선협회에 속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또는 한국복음친선협회의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 (2) 협동목사: 협동목사는 담임목사를 돕는 안수받은 목사로 담임목사 부재시에 예배와 교회업무를 관장한다.
- (3) 전도사: 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자로서 본교회의 목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 항 집사 : 집사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한 1 년이상을 교회에 출석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지닌 영적인 자격들 (행 6:3; 딤후 3:8-13) 과 교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실무적인 능력들에 기초하여 선택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업무 모임에서 교인들의 투표로 뽑는다. 집사는 다스리는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판단하기에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위임된 권위를 갖는다.

제 3 항 주일학교 교사 : 담임목사는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각 교사는 담임목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봉사할 수 있다.

제 4 항 음악지휘자 : 담임목사는 자격을 갖춘 지휘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지휘자는 담임목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봉사할 수 있다.

## 제 5 조 교회운영위원회

제 1 항 회 원 : 교회운영위원회는 목회자 (들), 집사 (들)로 구성된다.

제 2 항 임 원 : 담임목사가 교회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다른 직책으로는 회계와 서기를 둔다.

제 3 항 의 무

(1) 교회운영위원회는 교회사역의 비용을 제공할 총괄적인 예산안을 준비하여서 승인받기 위해 매년 1 월에 교회사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임목사의 승인없이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2) 건물 임대나 재산의 처분과 교회 일꾼들의 급료와 같은 사항들에 관해 , 그런 사항들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제안한다. 모든 제안들은 적합하게 소집된 사무총회에서 교인들의 투표에 부쳐져야 하며, 교회운영위원회는 교인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한다.<sup>i</sup>

(3) 교회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단 한 사람은 담임목사 (혹은 담임목사가 임명한 자) 이어야한다.

## 제 6 조 교회의 재정

제 1 항 교회운영위원회가 교회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 항 모든 재정사항은 교회의 재정출납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제 3 항 매분기마다 교회의 교인에게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분기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항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도와 관련한 결정은 적합하게 소집된 교회사무총회에서 유자격 투표권자들의 다수결을 요한다. 서울성서교회의 교회운영위원회는 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의 수탁자로 활동하며, 그런 재산과 관련한 교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권위를 지닌다.<sup>ii</sup>

## 제 7 조 집회

- 제 1 항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학교와 주일 예배를 포함한다.
- 제 2 항 성찬식은 매월 첫번째 주일에 갖는다.
- 제 3 항 특별예배는 교회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 제 4 항 업무적인 회의는 필요시에 소집될 수 있으며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정규예배 시간에 광고되어야 한다. 업무적인 회의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
- 제 5 항 사무총회는 1 월에 소집되며, 전년도 회계보고와 신년도 예산안을 다룬다. 이 회의에 대한 광고는 2 주일전부터 광고되어야 한다.

## 제 8 조 개정

담임목사의 임명에 관련된 (한국복음친선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제 4 조 제 1 항을 제외한, 이 규약의 개정은 개정을 목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출석 3/4 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서울성서교회의 교리적인 선언속에 공표되어 있는 교리들은 변개 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교리들로부터의 어떠한 이탈이라도 있다면 서울성서교회는 해체 되어야 한다.

## 제 9 조 부칙

- 제 1 항 이 헌법은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항 이 헌법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시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
  - 제 3 항 헌법제정 당시의 교회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이 헌법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헌법 제정 당시의 교회운영위원회 회원 전원이 전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명날인 함.

## 제 10 조 해체<sup>iii</sup>

(교회가) 해체할 경우, 서울성서교회의 재산은 교회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증 계획에 따르되, 비영리적이며 서울성서교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역을 하는 종교 단체, 자선 단체, 또는 교육 단체(들)에만 기증한다.

회 장      담임목사      켄      존      슌

회 원      협동복사      제랄드      존슨

회 원      협동목사      김      춘      덕

회 원      전      도      사      추      연      수

1994 년      2 월      20 일

서      울      성      서      교      회

---

<sup>i</sup> This represents an amendment passed by a congregational vote on November 20, 2011.

<sup>ii</sup> The original Section 4 was deleted and this new Section 4 was added by approval of a congregational vote on November 20, 2011.

<sup>iii</sup> Article X was added by approval of a congregational vote on November 20, 2011.